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2
----------	-----

제안년월일 : 2003. 6. .

제안자 :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목포시장의 의견조회
- 제14차, 제15차, 제16차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집중토론
- 제17차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개정이유

민간위탁 계약갱신시에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위탁의 평가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정기감사제도 도입 및 수시 감독사항에 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목포시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위탁기간 근거를 명시함(안 제13조)
- 나. 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회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위탁 운영기간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 다. 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복지회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3조)
- 라. 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문화의집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으

- 며, 시장은 문화의집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1조)
- 다. 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5조의2)
- 바.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6조)
- 아. 수련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련관 운영상황에 대한 년1회 정기감사 및 수시 지도·감독 등 조항 신설함(안 제20조제20조의2)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6. 관계법령 : 해당없음
7. 관련부서의견 : 별첨
8. 예산사항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 해당없음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1. 기타참고사항 : 목포시장 의견(별첨)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

제1조(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의 개정)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탁 운영기간은 목포시사회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조(목포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의 개정) 목포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위탁 운영기간은 목포시사회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자 19 년 월 일 시 분”을 “자 년 월 일 시 분”으로 한다.

제3조(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③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중 “시장은 위탁운영상황을 년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를 “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위탁운영상황에 대한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19 년 월 일” 을 “ 년 월 일”로 한다.

제4조(목포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의 개정) 목포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③문화의집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시 3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의집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목포시립도서관사용조례의 개정) 목포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개정)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자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7조 제1항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제1항중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를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 갱신을 심사하기 위하여”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심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휘·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지휘·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7조(목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목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6호중 “생활보호 대상가정 청소년”을 “기초생활 수급대상가정 청소년”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변상책임”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수련관의 위탁운영”을 “위탁운영”으로 한다.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운영이 건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 갱신을 통해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지도감독) 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관련)

□ 법령명 :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탁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관리) ①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③위탁 운영기간은 목포시사회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2조 관련)

□ 법령명 : 목포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운영) ①시장이 직접운영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p> <p><신 설></p> <p>[별지 제1호서식중] “자 19 년 월 일 시 분</p>	<p>제6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위탁 운영기간은 목포시사회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p> <p>[별지 제1호서식중] “자 년 월 일 시 분</p>

신 · 구조문 대비표 (제3조 관련)

□ 법령명 : 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운영관리) ①회관은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또는 노인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시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p> <p>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운영상황을 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중] 19 년 월 일</p> <p><신 설></p>	<p>제6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시 3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p> <p>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위탁운영상황에 대한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p> <p>-----.</p> <p>[별지 제1호서식중] ____ 년 월 일</p> <p>부칙 단서조항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제4조 관련)

□ 법령명 : 목포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p>제19조(위탁관리) ①문화의집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관련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문화의집의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시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p> <p>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 운영상황을 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9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문화의집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시 3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p> <p>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의집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제5조 관련)

□ 법령명 : 목포시립도서관사용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의2(위탁관리)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p>	<p>제5조의2(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제6조 관련)

□ 법령명 :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② (생략)</p> <p><u><신 설></u></p> <p>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③ (생략)</p> <p>④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⑤~⑥ (생략)</p> <p>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자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7조 제 1항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p> <p>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갱신을 심사하기 위하여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심사 ----- ----- .</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11조(지도·감독) ①----- ----- 지도·감독-----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제7조 관련)

□ 법령명 : 목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생략)</p> <p>1.~5. (생략)</p> <p>6. “불우청소년”이라 함은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청소년, <u>생활보호 대상가정 청소년</u>을 말한다.</p> <p>7. (생략)</p> <p>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② (생략)</p> <p>제20조(수련관의 위탁운영) ①~⑤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신 설></p> <p style="padding-left: 20px;"><신 설></p>	<p>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p>6. ----- ----- 기초생활수급 대상가정 청소년----- -----.</p> <p>7. (현행과 같음)</p> <p>제11조(변상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위탁운영) ①~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⑥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운영이 건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 갱신을 통해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0조의2(지도감독) 시장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 추진및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